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1.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1. 30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장기간 요율이 미조정되어 원가분석액에 미달되는 수수료의 요율을 정비하고,
-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간 수수료 격차 방지를 위해 06.7.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
- 개별법령에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 사무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 정하고 있는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정비하는 등 수수료의 현실화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사 무 명	현 행	개 정	비 고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000원	800원	1필지당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000원	800원	1주택당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000원	800원	1주택당
- 지방세 납세증명서	1,000원	800원	1건당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단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 경우)	1,000원	1,000원 (1,500원)	1필지당 (단서신설)

- 수수료 징수사무의 전면 재정비

- 수수료 징수대상 확대 :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외 13종
- 수수료 요율 현실화 : 위생처리업 변경신고외 3종
-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의 삭제 : 이·미용사 신규면허외 6종
- 기타 민원 사무명 및 조문 순서의 재 정비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06. 10. 17~ 11. 5) : 의견제출 없음.
- 거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06. 12. 27

5.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각종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수수료에 대하여 지난 2005년 6~8월 3개월에 걸쳐 250개 자치단체, 400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수수료에 대해 일제 정비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며 아울러 동조례안이 '82년 전면개정이후 26회 걸쳐 부분개정만 함으로써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금회에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토록 공문이 시달(경상남도 세정과 -6600호, 2006. 7. 4)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6종 [1)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2)개별 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 3)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5)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6)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을 개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기존의 1,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되었지만 그동안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임에도 수수료 격차가 들쭉날쭉 하여 곱지못한 시선을 불신시키게 되어 다행스런 일이라 사료됨.

○ 특히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계법령 개정이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신설한 항목이나 용어변경 또는 자구수정 조치한 부분과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신청민원과 기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현실에 맞도록 삭제하거나 재정비한 부분은 진정한 위민행정의 표본으로써 발빠른 행보로 인식되어지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사료되었음.

예)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되어 신설된 공장등록 증명, 입지기준 확인신청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신설된 석유판매업 등록,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승강기 보수업 등록·변경·재교부 신청,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 공중위생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식품환경→ 식품, 공중위생
-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원천과세→ 원천징수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른 용어 표기정리 등

○ 이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시행령

第130條 (使用料의 徵收條例등) ①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の 徵收에 관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